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기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